

내 토지주택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

[공고일 : 2024. 6. 17.]

1) 채용개요

- ※ 지원자는 공고일 현재 지원자격을 갖춘 **1개의 모집단위에만 신청**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지없이 전부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**근무개시일은 2024.7.18.(목)**입니다.
- ※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합숙소가 별도 제공되지 **않으니 출퇴근 가능 여부 판단 후 지원** 바랍니다.

모집단위	모집분야	채용인원	계약기간	근무지
1	촉탁연구 (연구2)	1명	'24.7.18. ~ '25.2.25. (약 7개월)	토지주택연구원 (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)
2	전문업무 (연구2)	1명	'24.7.18. ~ '25.4.16. (약 9개월)	

- * 금회 채용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기간제법)」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.
- *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.
 - 모집단위2(전문업무) 직무는 「기간제법」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 등 결원 인력에 대한 대체채용으로 상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.
 -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'복귀한 날 + 2 근무일'
 -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'근로계약서상 종료일' 또는 '정규 인력 대체일 + 2 근무일' 중 빠른 날
- * 근무지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) 업무내용

모집단위	모집분야	주요업무 및 직무내용
1	촉탁연구 (연구2)	○ 수탁 「2024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및 혁신방안 연구」 연구과제 수행 보조 - 토지이용규제 타당성 분석제도 도입 관련 연구 지원 - 토지이용규제 강도 정량화 및 활용방안 관련 연구 보조 등
2	전문업무 (연구2)	○ 업무보조 : LH 자체 및 국책·수탁 연구과제 수행 보조

3) 자격요건

모집단위	모집분야	자 격 요 건
공통		○ 한국토지주택공사 「인사규정」제9조(채용금지) 및 「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」 제8조(채용금지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1	촉탁연구 (연구2)	[자격요건] ○ 공고일(24.6.17.) 현재 관련학과*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* 관련학과 : 도시공학, 도시행정학, 도시정보학, 지리학, 건축학, 건축공학 등
2	전문업무 (연구2)	[자격요건] ○ 공고일(24.6.17.) 현재 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33호) 제3조 관련 공사가 인정하는 직무분야 관련학과*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* 직무분야 : 도시(붙임⑤ 참조)

* 관련학과는 모집분야에 적합한 예시로서 업무수행에 적합한 유사 전공을 포함하며,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·면접전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(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)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 (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)

[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]

<「인사규정」 제9조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4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
<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 제8조>

1.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(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)
2. 만 18세 미만인 자(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)
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(현장관리직, 폐기물관리직 및 관리부서 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인 자)
3.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4) 급여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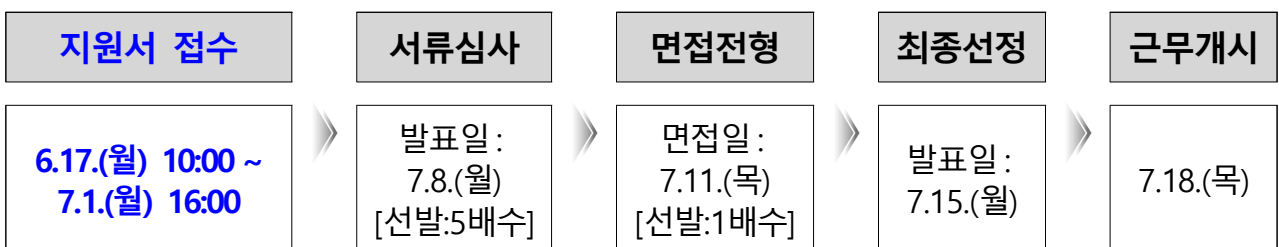
모집단위	모집분야	급여조건			
1	촉탁연구 (연구2)	○ 월 임금 이백칠십이만육천일백사십원(₩2,726,140)			
		합계(월)	기본급	직무수당	정기상여금
		2,726,140원	2,250,970원	100,000원	375,170원
2	전문업무 (연구2)	○ 월 임금 이백칠십이만육천일백사십원(₩2,726,140)			
		합계(월)	기본급	직무수당	정기상여금
		2,726,140원	2,250,970원	100,000원	375,170원

- * 급여는 실지금액이 아닌 세금·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임
- * 그 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「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지침」에 의함

5) 근무조건

구분	근무조건
근무시간	○ 1일 8시간(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), 주5일 근무
근무지	○ LH 토지주택연구원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*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

6) 채용절차 ※ 지원서 제출방법 및 기간(세부시간) 등은 6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



○ 전형방법

구 분	내 용								
<p>서류전형 (1차심사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○ 심사위원 50% 이상이 전공적합도를 부적합 판정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○ 평가기준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○ 평가요소 : 자기소개, 지원동기, 경험·경력 ○ 점수배점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3 651 1412 768" style="margin: 10px auto;"> <thead> <tr> <th>합계</th> <th>자기소개</th> <th>지원동기</th> <th>경험·경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점+가산점</td> <td>30점</td> <td>30점</td> <td>40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응시자의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대상별 가점비율에 따라 만점(100점)의 5% 또는 10%가 가산점으로 부여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발인원 : 모집단위별 각 5명(채용인원의 5배수) ○ 동 점 자 : 전원합격 ○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: '24.7.8.(월) 16:00 이후 개별통보 <p>*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☎042-866-8617) 하시기 바라며, 연락처 오기재·변경 이후 미통보,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</p>	합계	자기소개	지원동기	경험·경력	100점+가산점	30점	30점	40점
합계	자기소개	지원동기	경험·경력						
100점+가산점	30점	30점	40점						
<p>면접전형 (2차심사)</p> <p>면접일 : 7.11.(목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전형은 허들방식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○ 구체적인 면접장소(대전)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○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○ 평가기준 : 면접위원 면접점수 ○ 평가요소 :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조직적응력 ○ 점수배점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3 1682 1412 1798" style="margin: 10px auto;"> <thead> <tr> <th>합계</th> <th>의사소통능력</th> <th>문제해결능력</th> <th>조직적응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점+가산점</td> <td>30점</td> <td>40점</td> <td>30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응시자의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대상별 가점비율에 따라 만점(100점)의 5% 또는 10%가 가산점으로 부여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합격인원 :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 각 1명 	합계	의사소통능력	문제해결능력	조직적응력	100점+가산점	30점	40점	30점
합계	의사소통능력	문제해결능력	조직적응력						
100점+가산점	30점	40점	30점						

구 분	내 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비합격자 : 모집단위(분야)별 3명(고득점자 순 순위확정 선발) ○ 동 점 자 : 취업지원대상자 > 장애인 > 서류전형우수자* 순서에 따름 *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『경험·경력>지원동기>자기소개』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○ 합격자 선정 :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(불합격) 처리 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'24.7.15.(월) 16:00 이후 개별통보 *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☎042-866-8617) 하시기 바라며, 연락처 오기재·변경 이후 미통보,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

7) 신청서 제출

구 분	내 용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메일(ych92@lh.or.kr) 또는 방문* 신청 ※ 기타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* (방문주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, LH 토지주택연구원 다울관 1층 연구관리처 연구지원팀
신청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이메일) '24.6.17.(월) 10:00 ~ '24.7.1.(월) 16:00 -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7.1.(월)은 16시 이전 도착 분까지만 인정) ○ (방문) '24.6.17.(월) ~ '24.7.1.(월) 업무일(월~금요일) 10:00~16:00 - 단, 토·일요일, 공휴일, 업무일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제외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붙임 ①~③) 각 1부 * 면접대상자는 면접 당일 신분증을 구비하고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항목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사실관계가 상이한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음 (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됨) * 제반서류는 자필서명하여 스캔본(이메일 신청시) 또는 원본(방문 신청시)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것으로 간주됨 * 경력(재직)증명서에는 근무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, 해당 기관(단체)의 관인 날인 필요하며, 발급(업체)기관 서식이 당사 요청사항(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 등)을 미포함 하는 경우에 한해 붙임④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

구 분	내 용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이름,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, 양식 수정은 불가합니다. (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) ○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,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○ 이메일 신청 시, 접수완료 메일을 회신(단, 근무시간외·주말·공휴일에 접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업무일 회신)하므로 접수완료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(☎ 042-866-8617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접수완료 메일을 받지 않았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. ○ 공사는 접수기한 미준수, 모집분야 오기재, 제반사항 미비 등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사오니 지원자 분들께서는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)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 공고 건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중복지원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. ○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○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○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 ○ 합격자는 예비소집시 관련 법령 및 공사 사규에 따른 부동산 취득 관련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(동의서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합격취소(후순위자 합격) 됩니다.
--

-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.
-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. 부정 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,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, 채용시 자격을 제한하며,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(ych92@lh.or.kr)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※ 처리안내 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[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]

- 1)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,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- 2) 응시자 정보, 출제위원·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, 지적재산권(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

9) 채용서류의 반환

-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.
- * 다만,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, 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
- 청구방법 : 붙임 서식의 "채용서류 반환청구서"(붙임⑥) 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-mail(ych92@lh.or.kr)로 신청
- 청구기한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
- 기타사항
 -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간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 - 반환서류는 E-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(소요 비용은 公社가 부담)되며,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.

9) 문의 및 서류제출

구분	내용
담당자	o 사원 이창호(☎ 042-866-8617)
이메일 신청	o ych92@lh.or.kr
방문 신청	o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관리처 (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, 다울관 1층)

2024년 6월 17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(직인생략)

[붙임①. 공통(필수)]

입 사 지 원 서

1. 인적사항			
성명	(한글)	모집단위	1. <input type="checkbox"/> / 2. <input type="checkbox"/> · 지원하는 1개 단위만 선택(P.1 참조)
현주소			
연락처	(휴대폰)	전자우편	
	(비상연락처)		
추가항목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지원대상자 (가점비율 <input type="checkbox"/> 5%, <input type="checkbox"/> 10%)		

* (취업지원대상자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

2. 교육사항			
* 지원직무 관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입해 주십시오. (출신학교명 등 학력과 관련된 정보 기입 금지)			
교육구분	진공	교육기간	졸업구분
<input type="checkbox"/> 학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박사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
<input type="checkbox"/> 학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박사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
<input type="checkbox"/> 학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박사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

3. 자격사항					
*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/전문자격, 국가공인 자격/면허를 기입해 주십시오.					
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	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

4. 경험 및 경력사항				
* LH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. (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)				
* 최근 3년이내 근무이력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구분	소속조직	직위	근무기간	담당업무 내용
경험 및 타 기관 근무경력				
LH 근무경력 (현장 포함)				
비위면적여부 (필수체크)	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비위면적자로서 우리공사에 취업이 불가합니다. (연 2회 실태 점검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		

5. 연구실적 등

*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기입해 주십시오.

(해당자만 기술, 증빙가능한 내용만 **최대 10 개까지** 기재)

구분 (논문/과제)	제목	주요내용 및 역할	기재년월 (과제 수행기간)	기재기관 (과제 주관기관)	비고

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취소, 해고 등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지 원 자 :

(인 또는 서명)

[붙임②. 공통(필수)]

자기소개서

1. 자기소개
2. 지원동기
3. 경험 및 경력사항 기술

*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, 가족관계 (학력, 지위, 재산) 등의 사항과 「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4 조의 3 에서 수집·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(본인의 용모·키·체중 등 신체적 조건, 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,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)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[붙임③. 공통(필수)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1.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의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2. 또한,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및 활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3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(서류·면접 심사 등)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.
4.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의 사용 기간(채용기간)이 만료되면 동의서와 수집, 이용된 모든 개인정보자료는 즉각 폐기됩니다.

가. 개인정보 수집목적 : 채용 시 필요한 개인정보

나. 수집항목 : 성명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, 경력, 자격사항 등의 개인정보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고,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성명 : (서명)

[붙임⑤. 모집단위2(전문업무) 직무분야 관련학과]

□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

직무분야	학과
도시	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, 국토관련학과, 개발관련학과
<p>[비 고]</p> <p>1.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.</p> <p>2.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, 00학과, 00공학과,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.</p> <p>3. 학과의 신설,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,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(복수·연계·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·연계·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) 이수학점의 50%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, 50%미만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.(단, 고등학교는 배점 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)</p>	

□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

직무분야	전문분야	관련학과 및 전공
도시	도시계획	건설공학과(도시공학전공), 건축공학과(도시계획전공), 공간환경공학과(도시계획학전공), 국토개발학과, 도시관련학과(전공포함), 산업공학과(국토개발전공), 산업공학과(도시계획전공),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(도시계획및도시설계전공), 토목공학과(도시공학전공), 환경계획학과(도시 또는 지역관련전공), 환경설계학과(도시설계전공)
<p>[비 고]</p> <p>1.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교에 따른다.</p> <p>2.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.</p>		

[붙임⑥. 해당하는 사람(p.8 참조)]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